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2일, 도병두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치를 위한 근거를 수립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및 보행환경과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신설(안 제5조 및 제7조)

- 4)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8조)
- 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1) 개정 이유

○ 본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문화와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뢰받았음.

2) 주요 내용

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 “이용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업자 현황

○ 금천구 운영업체 3개

서비스명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약 1,000대)		
	지쿠터	일레클	스윙
운영대수	300	400	300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현황

○ 방치 킥보드 수거요청 민원이 접수될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민원접수

국민신문고,
전화 및 상담민원 등

교통행정과

⇒

민원전달

대여업체 담당자
이동조치 요구 및 계도

교통행정과

⇒

민원처리

방치PM 수거 처리

각 업체 현장 관리자

견인처리

시간 내 미조치 시
견인 조치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

민원답변

민원답변

교통행정과

-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이용자·대여사업자의 주차금지 및 무단방치에 대한 책무를 신설함
- 다) 구체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신설(안 제5조 및 제7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함
- 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8조)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14조)
 -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 의무 규정이 있으나 대여사업자에 대한 책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 권고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가입, 주차장·보관소 설치,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등 조례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¹⁾에 부합되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등 이용수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무단방치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지방자치법」 제28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